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17. 김영미 의원 외 7명

나. 회 부 일: 2023. 11. 20.

다. 상정일자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. 11. 29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차해영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일수 확대 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개정된 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확보되어 구의회만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더불어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휴가와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일수 등을 변경하고자 제안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14조제4항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성과와 평가기준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

하였고,

- 안 제14조제6항의 세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
  - 5년이상 재직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
  -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→15일
  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→25일
  -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→25일 로 하였음.
- 안 제14조제9항은 생일 휴가 1일을 부여하였음.
- 안 별표4 제2호나목중 유사경력 있는 경우 연가가산을 2일에서 3일 로 규정함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는 구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장기근속자, 생일자, 유사경력자에게 휴가를 신설하거나 추가한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웰빙을 증진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팀 협력 강화와 질병 예방 등의 장점이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됨.

## [관 계 법 령]

###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

-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